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. 4. 28 선고 2020가단6579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 종결 2021. 4. 7

판결 선고 2021. 4. 28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가. 아산시 C 대 218㎡ 2층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기부분 64㎡ 지상 시멘트블럭조 하늘색 양철지붕 주택과같은 도면 표시 11, 12, 13, 14,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㎡ 2지상 쇠파이프기둥 하늘색 양철지붕 건물을 각 철거하고,나. 아산시 C 대 218㎡를 인도하라.
2. 피고는 원고에게가. 16,012,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1. 1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나. 2020. 12. 17.부터 위 1의 나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153,6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판단

갑 제1,2, 3호증의 각 기재,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아산지사장에 대한 감정축 탁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원고는 아산시 C 대 218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의 소유자인 사실,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기부분 64㎡ 지상에 시멘트블럭조 하늘색 양 철지붕 주택을 같은 도면 표시 11, 12, 13, 14,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 분 10㎡ 지상에 쇠파이프기둥 하늘색 양철지붕 건물(이하 위 주택과 건물을 통틀어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인도할 의무가 있고,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 환할 의무가 있다.

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, 2010. 9. 1.부터 2020. 12. 16.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임료는 16,012,820원이고,2020. 12. 17.부터의 임료는 월 153,690원인 사실이 인정 된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,16,012,8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1.1. 11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이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2021. 1. 1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, 2020. 12. 17.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153,690원의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김재남